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 (2019. 9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최 국 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116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9월 9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9월 10일(화)

2. 제출사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유공 납세자를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유공 납세자의 선발(안 제3조)
- 다. 우대 및 지원 사항(안 제4조)
- 라. 선발 등 취소 및 사후 관리(안 제5조 ~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입법예고: 2019. 8. 1. ~ 2019. 8. 21.(제출된 의견 없음)

라.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
마.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: 원안 동의

바.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사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

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

- 구민의 납세의식 고취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이 조례의 제정으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표창,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, 구에 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.
- 이와 더불어,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.
- 다만 이번 조례안은 유공 납세자의 선발기준으로, 최근 10년간 지방

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 위 요건에 해당하는 많은 대상자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- 특히,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납세자 층에서만 유공 납세자를 선발하게 되면 비록 소액이지만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모범 납세자가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【관련 법령】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

제14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되,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, 2017.10.19>

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·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3.20>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[별표 1] <개정 2017.8.3>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-1구획당)

구분	노상주차장			노외주차장		
	1회주차 시 5분당	월 정기권		1회주차 시 5분당	월 정기권	
		주간	야간		주간	야간
1급지	500	-	-	400	250,000	100,000
2급지	250	150,000	60,000	250	180,000	60,000
3급지	150	100,000	40,000	200	100,000	40,000
4급지	100	50,000	20,000	150	환승목적주차 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
5급지	5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

※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
-노상주차장 : 월 4만원, -노외주차장 : 월 5만원

- 비고 -

-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
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
제 한다.